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364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12.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0918호로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187,244원 및 그 중 17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C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C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12.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 F, G, H(이하 망인의 자녀들을 ‘C 등’이라 한다)이 있다. 피고의 상속분은 3/11, C 등의 상속분은 각 2/11이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와 C 등은 2021.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2.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천시청,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11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와 피고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고, C는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C와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2/11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 등 C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별지